

# “공무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공직 진출 문 넓힌다”
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개정안 입법예고, 채용 기준 합리적 정비 -

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, 공직적격성평가(PSAT)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,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.

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‘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’의 후속 조치로,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.

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공무원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혀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.

기존에는 경력 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,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% 범위로 인정한다.

또한,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.

학위 취득(졸업)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(졸업)이 가능하면,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.

둘째,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.

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, 부처 자체 경력 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
마지막으로,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린다.

최동석 인사처장은 “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”며 “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(붙임)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인재채용국<br>인재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안현식 (044-201-82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지원 (044-201-8215) |
| 담당 부서 | 인사혁신국<br>균형인사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 은 (044-201-83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세령 (044-201-8297) |



**공무원임용시험령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| 개 선   | 조 항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경력 인정 범위 확대 (공포일 시행)            | ○ (자격증 채용)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불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(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7조<br>별표7<br>별표8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경력 채용) 기준 경력(관련 분야 3년 이상) 조정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소속 장관 인정시, 특정 분야 기준 경력(민간) 1년 이내 단축 가능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(학위 채용)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학위 소지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임용일 기준 학위 소지 필요<br>* 학위취득예정자 시험 응시·합격 가능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②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 규정 (공포일 시행)        | ○ 승진소요연수 경과한 6급 대상 필기시험 및 면접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소속 장관 추천을 받은 6급 대상, 필기시험 외 방식으로 시험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| 제39조<br>제40조<br>제41조 |
| ③경채 PSAT 활용 근거 마련 (27.1.1. 시행)   | ○ 5·7급 공채 및 민경채 등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(PSAT) 성적 활용 가능                   | ○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및 합격자 결정 방식 규정  | 제7조<br>제30조<br>별표4의2 |
| ④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개선 (27.1.1. 시행) | ○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격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응시 가능 | ○ (기준 완화) 수급자·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격 1년 이상 유지               | 제2조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○ (대상 확대) 보호기간연장청년, 자립준비청년도 응시 가능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**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 항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경력 인정 범위 확대 (공포일 시행) | ○ (자격증 채용)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불인정         | ○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(50%)                    | 제7조의2,<br>별표2의5 |
|                      | ○ (경력 채용) 기준 경력(관련 분야 3년 이상) 조정 불가 | ○ 소속 장관 인정시, 특정 분야 기준 경력(민간) 1년 이내 단축 가능 |                 |